### 민원사무처리규칙

제정 2013. 10. 14. 개정 2015. 04. 27. 개정 2016. 02. 12.

개정 2018. 08. 06.

### 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민원사무를 신속·친절·공정·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민원인"이라 함은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.
  - 가. 진흥원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. 단,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본다.
  - 나. 진흥원과 사법(私法)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진흥원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
  - 다. 진흥원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·주소 등이 분명하 지 아니한 자
- 2. "민원사무"라 함은 민원인이 진흥원에 대하여 요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(이하 "민원사항"이라 한다)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.
  - 가.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
  - 나.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
  - 다. 법령, 제도, 절차 등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

- 이나 해석의 요구
- 라. 진흥원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(이하 "고충민원"이라 한다)
- 마. 기타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
- 3. "인터넷민원"이라 함은 민원인이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흥원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.
- 4. "총괄부서"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관련 규정 제·개정, 민 원사무처리 실태 대정부 보고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5. "주관부서"라 함은 민원사무처리 창구 운영 등 실질적인 민원사무 처리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 단, 실적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 증명 및 확인서 등은 처리 주무 부서에서 직접처리
- 6. "처리주무부서" 란 민원사항과 소관업무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로서 접수된 민원사항을 이첩 받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 다만, 민원사항과 소관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원장이 처리주무부서를 결정한다.
- 제3조(기능) ① 총괄부서는 청렴감사실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5.4.27.> <개정 2016.2.12.> <개정 2018.8.6.>
  - 1. 민원사무처리 관련 규정 제ㆍ개정
  - 2. 각 부서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지도
  - 3. 민원사무처리 운영실태 대정부 보고
  - 4. 기타 민원사무처리 법률,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 - ② 주관부서는 심사평가지원팀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
  - 다. <개정 2015.4.27.> <개정 2016.2.12.>
    - 1. 민원사무처리 창구 운영
    - 2. 민원사무처리 목록의 작성, 비치
    - 3.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주무부서에 이송

- 4. 민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
- 5. 기타 민원사무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처리 주무부서는 제2조 6호의 부서를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- 1. 해당 민원의 신속한 처리
  - 2. 민원처리 결과 주관부서 통지
  - 3. 기타 해당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
- 제4조(적용범위)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,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.
- 제5조(민원신청 필요사항의 게시)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 요한 사항을 게시(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)하여 민원인이 이 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 2 장 민원의 신청·접수 및 이송

- 제6조(민원의 신청) 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 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·전신·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제7조(민원서류의 접수) ① 민원서류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한다. 다만, 인터 넷민원의 경우 그 시스템에서 접수·처리 및 관리할 수 있다.
  - ② 주관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,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③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서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고,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민원사항을 기록하며,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있다.
  - 1. 구술·전화·우편·모사전송·인터넷에 의한 신청
  - 2. 처리기간이 "즉시"로 되어 있는 신청
  - 3. 접수증에 갈음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신청
  - 4. 기타 원장이 민원사무의 성질 상 접수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 정하는 민원
- 제8조(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) ① 민원사항을 접수 또는 처리함에 있어 서는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 니 된다.
  - ②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.
  - ③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·여권·자동 차운전면허증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명서나 진흥원의 문서 또는 자료로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9조(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)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3인 이상의 민원 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서류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 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 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

- 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 중 3인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 인으로 본다.
- 제10조(민원서류의 이송) ① 주관부서에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총 괄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 시간 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.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 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.
  - ② 진흥원 내에서 소관이 아닌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주관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.
  - ③ 진흥원 소관사항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 근무 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,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 3 장 민원사무의 처리

- 제11조(민원사무처리의 원칙) 민원사무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,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제12조(민원사무처리자의 의무) ①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자(이하 "민 원사무처리자"라 한다)는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·공정·친절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.
  - ② 민원사무처리자는 민원인이 제도개선 요구, 이의 신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민원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,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3조(민원의 처리기간) ① 민원은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단, 민원사무의

처리기간을 "즉시"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- 1. 증명 또는 확인서 신청 : 즉시
- 2. 이의신청, 진정, 청원, 건의 : 7일 이내
- 3. 질의
  - 가. 민원인이 진흥원을 방문하여 단순한 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설명을 요구한 경우 : 즉시
  - 나. 가목 이외의 질의 : 7일 이내
- 4. 관계법령 또는 규칙에 의한 승인·지정·인정·추천·시험·검사 등 : 그 법 령 또는 규칙에서 정한 기간
- 5. 기타 진흥원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: 14일 이내
- ② 민원 처리기간은 민원의 접수일로부터 시작한다. 다만,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민원은 익일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민원 처리기간에서 공휴일은 제외한다.
- 제14조(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 - 1.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(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)
  - 2. 접수·경유·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
  - 3. 제8조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
  - 4.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
  - 5. 실험·검사·감정 또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 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
  - 6.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
  - 7.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

제15조(민원서류의 보완 및 반려 등) ① 주관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

- 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문서·구술·전화·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, 민원인이 특별히 요구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.
- ③ 민원인이 제3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.
- ④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,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민원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.
- ⑥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.
- ⑦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접수, 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(전자문서를 제외한다)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.
- 제16조(부서간의 협조) ①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 서 간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 위 안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, 요청받은 부서 는 협조를 요청한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  - ②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

- 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·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.
- 제17조(처리기간의 연장 등)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고충민원의 처리)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  - ②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·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,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③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제19조(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)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(제2조 제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)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내부결재를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.
  - ②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(제2조제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)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

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원을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- 제20조(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) ① 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 금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(이하 "다수인관련민원"이라 한다)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하고,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·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.
  - 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③ 감사부서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21조(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)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·관계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진흥원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22조(민원사무의 정보보호) 원장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.

### 제 4 장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·점검 등

- 제23조(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) ①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처리진행상황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전화,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

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- 제24조(처리결과의 통지) ①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처리담당자의 명시)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,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유의 통지,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소속·성명 및 연락처(전화번호·모사전송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)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26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민원사항에 대한 진흥원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-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4호서식의 이의 신청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27조(접수거부·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) ①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,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,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이 있 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8조(민원사무심사관) ①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·점검 등을 위하여 진 흥워에 민원사무심사관을 둔다.

-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.
- ③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완결 처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
- ④ 민원사무심사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그 조치사항을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처리상황의 확인·점검) ① 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
  -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·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(개정 2018.8.6.)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 〈별표 1.〉

민	원		서	류
접수병	번호	:		
접수약	일시	:		
처리기	기한	:		

## 〈별표 2.〉

민	원	서	류
협조부	부서명	:	
협조기	]한 :		

[별지 제1호 서식]

# 민원사무처리부

접수 접수 처리 번호 일자 부서	처리 처리	시처	민 원 인				처 분					
번호	일자	부서	기한	신청 방법	성명	전화	주소	민원내용	내용	처분 일	비고	

### [별지 제2호 서식]

		접	수	증		
제	<u></u> Š	민	접수일시 원 명	] : 2013.		:

민원접수자 : (서명 또는 인)

(전화 : )

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

#### [별지 제3호 서식]

#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

귀하

주 소:

제 호

① 민 원 명

한국콘텐츠진흥원 민원사무처리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의 처리진행상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며,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 다.

2013년 월 일

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

## [별지 제4호 서식]

#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대장

접수	접수접수 처리 처분 번호일자 부서 민원	처분 민원명	처리 기한	이의신청인			처 분	비고			
번호	일자	부서	민원명 기한	민원명	기한	성명	전화	주소	내용	처분일	P1 1/-